

특허법 일부개정사항안내

- 2013년7월 1일 시행 -

특허법 일부의 개정 법률안이 2013년 3월 22일 공포되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개정의 주요내용 -

1. 특허출원의 회복 기회 확대 (특허법 제67조의 3 신설)

출원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하여 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원심사·재심사 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출원이 소멸된 경우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원심사·재심사를 청구하면 소멸된 특허출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

2. 특허출원의 보정 절차 개선 (특허법 제47조제4항)

최종적으로 보정된 발명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견서 제출기간 각각의 보정 절차에서 마지막 보정 전에 한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함.

□ 종전법 및 개정법 적용 비교

구 분	의견제출통지서 전의 보정(자진보정)	의견제출통지서에 따른 지정기간 내의 보정
'13.6.30. 이전 출원 (종전 특허법 적용)	복수 보정서 제출 가능하며, 누적으로 반영됨	복수 보정서 제출 가능하며, 누적으로 반영됨 (최후 보정의 경우 각각에 대하여 승인/각하 판단)
'13.7.1. 이후 출원 (개정 특허법 적용)		복수 보정서 제출시, 마지막 보정 이외에는 모두 취하 간주

3. 수수료 반환대상 확대 (특허법 제84조제1항제4조)

출원 후 1개월 이내 출원을 취하·포기한 경우,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외에 추가로 우선권 주장 신청료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함. 단, 분할출원, 변경출원,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출원은 제외함.

4. 전기통신수수료 반환대상 확대 (특허법 제29조제1항제2호)

특허 받을 수 없는 요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서 대통령령을 삭제하여 모든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변경함.

◇ 적용대상: 2013년7월1일 이후의 출원부터 적용

변리사 김 한 열

[서울사무소]
특허법인 우린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133 (역삼동, 정호빌딩3층)
TEL. : 022-565-2300 (代)
FAX : 02-565-7337
Homepage : www.withpatent.com

[창원사무소]
특허법인 우린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7
TEL. : 055-287-3399
FAX : 055-275-4644
e-mail : woorincw@naver.com